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01

발의연월일: 2021. 2. 15.

발 의 자:권영세·성일종·박태출

이태규・지성호・최연숙

정동만 • 태영호 • 박완수

정경희 · 김형동 · 김태흠

정희용 · 한무경 · 조수진

김기현 • 유의동 • 이명수

정점식 • 권은희 • 김은혜

김성원 · 박성민 의원

(2391)

제안 이유

지역의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 안정성을 믿고 지역사랑상품권을 선불로 구매하여 사용해 오고 있으나, 법률에 정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충전금, 이자 수입 및 유효기간이 지나서도 사용되지 않고남은 금액 등의 관리를 민간 발행·위탁업체에 맡겨두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사랑상품권 자금의 보다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좌로 상품권 충전금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환보증보험 가입 등 안정적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을 의무화하는 한편,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현황 등을 반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의 충전금 등 운영자금 관리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 관리 의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의2제1항, 제2항 신설).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자가 지역사랑상품권 구매를 위해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금액,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자금("상품권 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계좌에 보관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상품권 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계좌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상환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운영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상품권 운영자금 보유 현황 등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 개하도록 규정함.

법률 제 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이자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판매·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 운영자금"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계좌에 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 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계좌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상환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신 설>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판매・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 운영자금"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계좌에 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 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계좌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례로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보증보험가입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현 행	개 정 안
<u>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u> 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을 구 매하기 위해 지급한 자금, 유효 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 역사랑상품권을 발행・판매・ 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 품권 운영자금"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계좌에 보관하 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 가피한 사유로 상품권 운영자 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계좌로 관 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 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 별로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